



제1563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레

○ 조	레 제 1 7 1 5 호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2
○ 조	레 제 1 7 1 6 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조	레 제 1 7 1 7 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조례 등 일 부 개정 조례안		17
○ 조	레 제 1 7 1 8 호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20
○ 조	레 제 1 7 1 9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조	레 제 1 7 2 0 호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9
○ 조	레 제 1 7 2 1 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33
○ 조	레 제 1 7 2 2 호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37
○ 조	레 제 1 7 2 3 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조	레 제 1 7 2 4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조	레 제 1 7 2 5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문		59
○ 조	레 제 1 7 2 6 호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63

회 람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15호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단, 중앙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실명제의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된 사업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제7조제1항 관련)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사업부서	④담당자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 기재
-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제7조제3항 관련)

① 사업부서		② 담당자 (연락처)	
③ 정책사업명			
④ 선정기준		⑤ 사업기간	
⑥ 주요내용			

<기재항목>

-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②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③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제7조제3항 관련)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20-01	사업부서 작성 자	(부서명 / 담당명) (성명 / 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할 수 있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제3조)
-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사항(제4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6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에 관한 사항(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16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를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회에 한정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를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별표에”를 각각 “별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락시는 소송물가액의 0.5%”를 “인낙 시는 소송물가

액의 0.5퍼센트”로, “50%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를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표에”를 “별표를”로 한다.

1. 승소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6퍼센트,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8퍼센트, 80퍼센트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를 지급한다.

제8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제2조제3항 관련)

승 낙 서

변 호 사 ○ ○ ○

본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청 럽 서 약 서

나는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남동구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용, 금품 수수 및 부당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사전통보 및 자진 사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본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로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공개동의서 서식 신설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추가)
- 고문변호사 위촉 등 현황 공개에 대한 근거 신설 (제10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17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동구 표창 조례의 개정)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양양”을 “드높임”으로 한다.

제2조(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기양양을”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하여 구민의 권리보호 및 법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표창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제1조
-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정비 : 제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18호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구민의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안전교육”이란 남동구민이 수상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상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수상안전교육센터”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3. “수상안전교육 전문 인력”이란 수상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수상인명구조원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상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상안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2. 수상안전교육 시행에 대한 평가
3. 수상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4.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안전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위원회 간사는 수상안전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수상안전교육 활동지원)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상안전교육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거나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청장은 다양한 수상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영입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수상안전교육 전문 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민의 수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
-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 수상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19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

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감면율”은 100분의 100”을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32조에”를 “제32조를”로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에”를 “「조세특례제한법」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865호, 2020.1.15.)에 따른 감면규정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 2020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체계 정비(제4조)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제6조, 제13조)
-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제8조)
- 감면 제외대상의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9조)
-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제3조, 제5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제10조, 제14조, 제1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20호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농지가 남동구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사람

나.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3. “농업단체”란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중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경작지가 남동구인 연구회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남동구 농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2. 농업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결정)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따라 구성된 남동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림분야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지원 대상, 조건, 방법, 지원율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방법 및 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제4조 ~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21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언어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영아자녀”란 2세 이하의 아이로서 청각장애인 부모(부 또는 모 어느

한쪽만 청각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아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시책을 수립하고 언어발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언어발달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영아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아자녀의 언어발달 돌봄과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남동구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수어가능자가 가정방문을 통한 영아의 언어발달 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사유로 영아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영아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 영아의 언어발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청각장애인 부모 영아자녀의 언어발달 활성화와 이들의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도모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제3조)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 (제5조, 제6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
-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제9조)
-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22호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구, 기업,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지방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구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① 구 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책 및 사업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소관분야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평가하여 녹색성장업무 담당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점검·평가결과를 종합평가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 추진계획을 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 또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건축물이 녹색 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 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동주택, 학교, 기관 등에 표창·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 등에 기여
2.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및 감축실적 우수
3. 자원 절약,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참여 및 추진실적 우수

④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에 소속 공무원이 출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및 일반교양,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을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제1조~제3조)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4조)
-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제6조)
-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 (제7조)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제8조)
-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23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를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데”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

를 말한다.

6. “방법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문, 방법창, 방법용 망창, 방법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명”을 “조명, 방법문, 방법창 및 잠금·경보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방법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적극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이 라”를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 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 중 “도시디자인의”를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도시디자인

인 추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법시설 등 침입방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천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2조로 하며,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방법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 추진” 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 으로, “도시디자인 위원회” 를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위원회”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디자인” 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디자인 추진” 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 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도시디자인 추진” 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 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도시디자인과” 를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와” 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 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등 설치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함
- 조례의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 정비 : (제2조~제4조)
 - 제2조 제4호·제5호·제6호 신설 :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의 용어 정의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 : (제5조)
-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신설 :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24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에서”를 “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구조안전확인서

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조에”를 “제9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에”를 “제16조에도”로, “표시기간에”를 “표시기간에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을 “영 제26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명에서 5명”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조례에”를 “조례를”로, “이를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위탁자의”를 “수탁자의”로, “위탁자에게”를 “수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수탁자에게 공공게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를 “수탁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공공게시시설”로, “수탁기관에”를 “수탁자에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센터”를 각

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관리자”를 “해당 광고물 등의 관리자”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한다.

제30조제8항 중 “제7항에”를 “제7항에도”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점검 수탁자”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32조 후단 중 “관리 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6, 별표 7,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 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파. 벽보(50매)	5,000원	
하. 전단(500매)	5,000원	
거. 입간판	4,000원	
너. 전자게시대(광고 1건당)	6,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29조 관련,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6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제1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 (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21조제3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			사무실 면적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210mm×297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제21조제4항 관련)

수 탁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5호, 2020.4.28. 개정)」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20.6.2.)」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령 및 市 조례에 따라 용어 등 일치 정비(제2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시행령에 따른 권한 외 조항 삭제 (제7조)
 -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 → 시·도지사의 권한(시행령 제21조)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 정비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추가(별표 6)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의 징수방법 수정(별표 7)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25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래포구 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이란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상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 및 영조물을 말한다.
2. “점포”란 어시장의 일부로서 수산물 판매업소 및 매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점포 및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권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시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점포, 편의시설 및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로 구성된 어시장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어시장 내 점포 또는 편의시설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납부) ① 제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징수되는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
2.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요율로 계산한 금액

-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따른다.
- ③ 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납부한다.

제7조(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시설 파손방지 등을 위한 노력) ① 사용자는 어시장 내 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비치) 구청장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실 내에 갖추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17. 3. 18.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어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어시장’의 정의 : (제2조)
 - 어시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
 - 어시장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제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726호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실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

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세대 및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보건

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illegible]210mm×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9조 관련)

○ 동 행정복지센터, 남동구 보건소 방문 방역자 : (서명)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상세하게 기재)	처리		방역확인 (신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제3조)
-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사항(제4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6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에 관한 사항(제7조)